

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안내

◇ 기준중위소득(소득인정액) 85%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

1 사업 개요

○ 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85%이하 가구

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85%이하	1,493,615	2,543,183	3,289,990	4,036,798	4,783,605

○ (지원내용)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0~800천원 차등지원

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 이상
지원금액	500,000	600,000	700,000	800,000

○ (지원방법) **예천사랑상품권** ※예천사랑상품권 소진 시 온누리상품권 지원

○ (지원제외)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됨.

■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

- ①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(기초, 차상위)
- ② 긴급지원사업 대상자
- ③ 실업급여 대상자
- ④ 코로나-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

*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, 특수형태종사·프리랜서 등,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

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교직원, 공공기관 임직원

2 신청 절차

○ (신청접수) 2020. 4. 1.(수) ~ 4. 29.(목)

○ (신청기준) 2020. 4. 1.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

- 신청인 :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, 대리인

※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
- 신청서류 : [필수서류]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재산신고서

[기타서류] 통장거래내역서, 급여명세서, 부채증명서, 임대차확인서 등
소득증빙서류(※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)

- 접수방법 : 효자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, 마을이장 대리 접수

3 세부 상세 기준

○ (보장범위)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(동거인제외)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, 해당되지 않은 자는 동거인으로 반영
- 보장가구의 배우자(부부)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어도 소득 조사 대상에는 포함하며,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경상북도에 둔 자에 한하여 모두 지원
※타 시도에 있을 시 1명만 지원
-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도 상기기준 적용
* 단, 기준 중위소득 50%이상의 소득활동이 있을 시 보장가구 분리 가능

○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사

○ (소득인정액 기준) 기준 중위소득 85%이하

【소득기준】 - 근로소득, 농업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 등

【재산기준】 - 주거용 재산, 일반재산(토지, 건물, 자동차, 임차보증금, 분양권 등),
부채(금융기관 대출금, 임대보증금 등)

☞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